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6. 6. 14. (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양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6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지방보조금 지원(안 제4조)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안 제5조)
마.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점검(안 제6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교직원의 통일・안보교육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통일・안보교육행사를 시행하는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3조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각종 행사에 필요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의 실적보고와 지방보조금 집행 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